

낙농업의 실상과 장기발전 전략방안 ②

김 경 래
본회 정책기획부장

〈지난호에 이어서〉

6. 생산기반 - 3D 시대와 경영환경

선진국이니 뭐니 하며 나라의 발전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정부의 홍보물에는 으레 푸른 초원에 빨간 지붕의 싸이로, 하얀 울타리 그리고 풀을 뜯는 젖소가 한가롭다. 그리고 이런 광경을 두고 문학 작품만이 아니더라도 낭만적이니 목가적이니 뭐니 하는 말들이 흔하다. 혹자는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목장이나 하면서 한가롭게 지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실상이 그러하고 낙농업이 그럴 수 있는 산업이라면 낙농업을 하는 농가는 행복으로 충만하리라. 과연 그러한가. 그것은 바로 낙농업의 허상일 뿐이다.

낙농업이 그림처럼 행복한 것이라면, 그렇게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것이라면 누가 낙농을 포기하려 하겠는가? 그러한 것이 허상이라고 단정할 때 실상은 무엇인가.

낙농가는 고달프다. 그것은 낙농의 생산활동과 노동이 지니는 특성때문이다. 이미 서두에 이 산업이 지니는 특성에 대하여 먼저 거론한 바 있거니와 그것이 바로 낙농노동의 특성이기도 하다.

〈표13〉 전국 낙농가 감소의 실태

연 도	1985(A)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B)	B/A
낙농가수	43,760	42,728	38,131	35,713	36,040	33,277	30,150	27,965	63.9%

자료 : 농림수산부 「가축통계」 1993. 3

낙농가는 엄청난 노동량에 시달려야 한다. 때 안놓치려고 한밤중에 파종하는 난리를 치러 본 일이 없는 사람은 그 긴박한 사정을 모른다. 낙농에는 농번기라는 개념은 있어도 농한기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다. 그것도 하루도 쉴 수 없는 노동의 연속이며, 사료급여, 착유에서 경작과 분뇨처리에 이르기까지 집중되는 작업량은 엄청나다. 힘들고, 위험하고, 깨끗치 못한 일을 모두 싸잡아 안고 있다. 필경 이러한 여건은 목가적인 입장에서 낙농가의 증가가 아니라 산업발전과 더불어 낙농가의 감소로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어디 그뿐이런가, 낙농가에게 가하여 지는 어려움은 그 뿐이 아니다. 각종 복잡한 인허가, 부족한 자금여건, 농촌노동력의 부족과 노임의 상승, 생산비도 보상받지 못하는 불안한 가격여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급불안, 축산폐수에 대한 규제압력의 증가 등 무엇

하나 깨운 것이 없다. 목장규모를 키우고자 하여도 땅값을 당해낼 도리가 없다. 제도자금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간혹 뜻있는 낙농가가 비교적 농지값이 싼 낙농의 적지를 찾아 목장을 옮기고자 하여도 낙농의 주변여건(도로, 용수, 사료공급기지, 수의사, 수정사, 기계수리소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낙농가 자신은 그 스스로가 수정사이며, 수의사이며, 시설설계자이며, 장비운용자이며, 근로자이며, 경영자라는 복합기능의 전문가임에도 누가 그런 수준으로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원유생산비계산에서도 이를 고려하는 항목이 없다. 캐나다 낙농가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낙농가이고 우리의 낙농가는 아니라는 말인가?

최근 7년동안 전국의 낙농가 수는 36%가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전국의 농가수 감소를 훨씬 앞지르는 속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기실은 낙농업이 특히 3D 상황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낙농의 사정은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다. 이미 선진국이 모두 하나같이 경험하였고 그들 나름대로 해법을 구하였던 것이다. 낙농가가 직면하는 어려움들로 낙농산업 자체가 농가들로부터 기피된다면 한 나라가 필요한 낙농품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꼴로 떨어지고 만다. 그렇게 되는 날이 바로 선진국의 의미도, 강대국의 면모도, 문명국의 위상도 모두 포기하고 마는 날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일국의 낙농산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제일은 생산기반이 유지되도록 하는 여러가지 장치를 정부가 맡아주는 것이다. 이러한 장치는 산업의 융성을 위하여 정부가 사회 간접자본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지역조건에 맞는 낙농경영형태의 설정과 보급, 실효성 있는 낙농우사 표준설계도의 개발, 가축개량, 수의사의 확보와 배치, 후계낙농가의 육성 등이 될 수 있다.

다음은 낙농가가 행복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낙농가에게도 도시가구가 누리는 문명

과 문화의 혜택이 누려지도록 하는 부수장치를 해주어야 한다. 연중 휴일없는 낙농가에게도 휴일을 제공 하는 제도를 갖추는데 정부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낙농기술전문단 파견 관리제도(일명 헬퍼제도)를 활력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생산의 전문화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정책 방안이다. 어떤 산업이든지 고도의 발전단계에서 고전적이기는 하지만 산업구조가 자동조정되어 그 능률이 고도화하는 단계를 거쳤다는 점을 낙농산업에서도 활용할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고전적이라는 개념은 역시 전문화, 단순화, 표준화이다. 우리나라의 낙농기반이 대부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 영세성 때문에 비효율, 복잡 단단한 노동과정, 저생산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를 전업화로 타개하고자하는 의도도 대단히 훌륭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 시각을 바꾸어 농가에 항상 착유우가 가득하고 송아지육성이나 가축개량을 전문화하는 수준으로 개편한다면 젖소의 실질적인 경제수명을 늘이고 경영경제상의 능률을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임에 틀림 없다.

낙농의 경영환경은 농가자체 중심보다는 역시 외적인 문제이다. 교육여건, 의료시설, 농촌문화의 숙성, 기타 복지시설 등도 이와 관련된 과제들이다. 물론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취지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이 모든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이지 않는다.

7. 그림의 떡-제도자금과 보조사업

낙농업의 개선은 생산성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의 개선에서 출발한다. 농촌노동의 고 임금화를 극복하고 적은 노동력으로도 많은 성과를 성취해내려면 그리하여 가족노동 중심으로 낙농을 영위하려면 이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은 정부의 전업화 촉진을 위한 방침과 일치한다. 시설개선은 그것이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든 농가 자체사업이든 구분없이 반드시 자금이 전제된다.

만약 낙농가가 시설개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려면 가

진게 많거나, 아니면 벌어들이는 것이 많거나 하다못해 아쉬움없이 돈 빌릴데라도 있어야 하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돈 없고 못벌고 당장 어쩔도리가 없으니 기대할 곳은 제도자금(정책자금)일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도 그리 수월치 못하다. 아니 꼭 막힌 것이나 다름 없다. 우선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농에 관련된 제도자금은 약 20가지가 있다.

이러한 자금을 농가가 쓰려면 그 자금이 원하는 농가 누구나가 쉽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우리의 제도자금은 농가가 그런 자금을 쓰고자 하면 각 자금별로 과정이 다르기는 하나 대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1) 차입희망농가 신청서 제출(또는 축협, 시군도에서 조사) 2) 시장군수의 검토 및 추천서첨부 도지사에게 제출 3) 도지사는 추천서첨부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앙정부(농림수산부)에 제출 4) 농림수산부는 대출지원대상자를 최종확정하여 도지사와 축협중앙회에 통지 5) 도지사는 시군으로 통지, 축협중앙회는 도지회로 자금배정 6) 축협은 여수 신규정예에 의거하여 농가의 담보물건을 확보하고 대출 7) 대출자금사용에 관하여 일선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맡음.』

과연 이러한 방식들이 농민의 이용에 편리하거나 한 것이며 농어촌구조개선이라는 정부정책이나 신청부의 행정규제 완화조치 등에 걸 맞는 것일까? 따질 것도 없이 몇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제기된다. 우리

<표14> 낙농관련 제도자금과 보조사업 실태

자금의 종류	구분			대출 한도	유자 비율(%)
	유출	유자 조건	상환기간		
양축자금	년5%	-	1년내	800만원	-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자금	년5%	3년	7년	1억원	70
조합특화사업자금	년3%	3	7	20개소 총 60억원	70
축사시설개선자금	년5%	3	7	3천5백만원	70
축산기계화자금	년5%	2	3	기종별 구입자금	70
축산단지조성자금	년5%	3	7	단지당 14억원	70
신규초지조성자금	년5%	3	7	소요액의 50%	-
기성초지보완자금	년5%	3	7	소요액의 50%	-
관광목장조성자금	년5%	3	7	7억원	70
원유검사장비 구입자금	년3%	2	3	1억5백만원	70

2. 제도자금 및 보조사업

기종	단가	보조비율(%)			자담 비율(%)	유자 비율(%)	유자 조건	비고
		중앙	지방비	기금보조				
사료작물재배자금	1헥타당	78,500원	20	20	60	-	-	-
종자재비	1헥타당	198,000원	-	-	50	50	-	-
조사료생산기반개선	1헥타당	5,000원	-	20	70	10	-	-
토지개량비	1헥타당	9,700원	-	20	70	10	-	-
부장도로개설	1km당	10만원	-	20	70	10	-	-
조사료생산기계화	단기조성	7천만원	-	20	30	10	40	년5% 3년 7년
조사료생산사업단	시설차자금	4억원	-	-	50	10	40	년5% 3년 7년
사료용뿔수수기	보급사업자금	6백만원	-	-	50	10	40	년5% 2년 3년
뿔(보리)알	니어처리사업자금	50만원	-	-	80	20	-	-
사료저장용	하이로시설자금	9백만원	-	-	50%	-	30%	년5% 3년 7년

3. 축산폐수처리 지원자금

시설장비	유자 한도	보조 비율(%)	유자 비율(%)	자담 비율(%)	유자 조건	비고
간이정화시설	2백1십만원	21	49	30	-	-
정화시설	1천만원	-	100	-	년3%	-
개별농가비료시설	5천만원	-	-	50	50	3년기치
개별농가퇴비처리장	1천만원	-	-	50	50	7년상환
분뇨운반장비	6백만원	50	20	30	30	공통임.
축분발효시설	2억원	50	20	30	30	-
퇴분제조시설	1억5천만원	-	-	50	30	-
분뇨저장탱크	1천만원	50	20	30	30	-

낙농업에 있어 제도자금이나 보조사업의 경우에 특기할 만한 문제점은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자금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얼마나 농가에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협회의 월간지 「낙농육우(1993. 4월호)」에 한육우농가에 대한 제도자금 안내자료가 게재된 이후 많은 농가가 우리나라에 그런 자금이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을 알려 왔다. 그리고 이웃 농가는 이런 저런 정책자금을 빌려서 목장규모를 늘이는데 그런 돈을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 전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이것이 오늘날 우리 축산계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노정할 사례가 될 듯하다.

그러한 것은 한우농가 뿐만이 아닐 것이다. 어찌 낙농이 예외가 될 수 있으랴, 어느 조합에서 임원이 되려고 기를 쓰는 농가가 말하기를 쓴 이자의 자금을 쓰려면 조합임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낙농가를 위한 제도자금 안내서는 협회에서 따로 발

간하여 낙우회 단위로 비치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발송하였음. 필요하신 농가는 「알아두면 편리한 1993년도 낙농제도자금 핸드북」을 우표 500원어치를 동봉 신청하면 보내드립니다.

둘째, 제도자금의 관리가 중앙집중식인 것이 타당한가? 자금차입의 과정은 복잡다단하지 않은가? 체계화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답부터 말하자면 이 또한 잘못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자금마다 결정체계가 다르다. 일선 공무원도 농가도 조합직원도 웬만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헛갈릴 수 밖에 없다. 만약 제도자금이 농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정책목표가 뚜렷하다면 이런 방식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절차와 방법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즉, 중앙정부는 정책목표와 지역여건에 따라 자금의 총액을 지역단위(시도단위)로 배정하고, 시도지사는 지방정부로서의 시책과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시군단위로 재배정하도록 하며,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의 조합과 협의하여 농가에 홍보하고 신청즉시 가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앙정부나 시도지사는 자금의 집행이 정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와 방법에 합당하게 처리 지원되었는가를 감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정부는 실무적인 일을 일체 관장하지 않으므로 일을 덜 수가 있고, 농가로서는 신청한 결과가 되든 안되든 신속히 알게 되므로 무한정 기다리거나 기다리다 낭패보는 일이 없어 편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방법이 일선 공무원과 조합직원의 업무를 늘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처럼 신청받고, 조사하고, 문서만들고, 보고하고, 지시받고, 시행하는 번잡한 과정을 줄이는 것이다.

세째, 농가가 실제 차입하는 데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닌가? 과연 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다. 사실 모든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막판에 가서 담보가 없어 쓸 수 없게 되는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점에 관해서 아마 일선 공무원 중에서 군에 배정된 자금을 반납해 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본다. 쓰고 싶어도 못쓴다면 또는 쓰

도록 결정되고도 못쓴다면 이것이야말로 속담 그대로 그림의 떡(畫中之餅)이 아니겠는지.

담보문제에 관한 한 모두의 사고를 일대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자금지원체계 하에서는 그 누구라도 담보없이 덤픽 자금을 농가에 대출해 줄 수 없다. 그러나 낙농의 경우 협동조합이 아닌 일반유업체들이 낙농가에게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협동조합은 안되고 유업체는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유업체는 사실상 자금지원에 대한 담보를 그 유업체가 점유하는 낙농가의 생산물(원유)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지역조합 위주로 자금이 지원되는데 이 때 지역조합은 낙농가의 생산물인 원유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나 의무도 없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 새로운 담보물을 요구할 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낙농가가 제도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낙농에 관한 자금일체를 낙농협동조합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 업종조합은 낙농가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다. 해당농가의 제도자금 차입목적이나 용도가 무엇인지, 당해농가가 자금차입 후 이민하려는 것인지 아닌지, 영농이 제대로 돼가는지 아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농가의 생산물 자체가 있으므로 그 생산물(우유) 확보를 전제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주는 개인 유업체처럼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임에 틀림 없다.

네째, 마지막 의문점은 정부가 제도자금운용에 관하여 그 결과를 어떻게 심사분석하고 평가하고 다시 정책에 어떤 수준으로 반영하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어떤 형태로든 이런 종류의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혹시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만약 정부가 제대로 평가작업을 행하였다면 상기의 세가지 문제점은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점이 해결 안된 것으로 보아, 하다 못해 자금마다 신청, 결정, 지급절차가 판이하게 다른 점(사실은 축산국내에서도 과별로 다르다) 하나만 보아도 알 일이다. 하기가 현재와 같이 실무수준에 까지 자금관리를 중앙단위로 운영하는 체제하에서는 그럴 시간도 방법도 없을 것

이다.

8. 낙농가의 자화상-일반 수요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얼마전 모협동조합의 직원이 낙농가의 자화상에 대하여 글을 쓴 적이 있었다. 주변에서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해서 필화사건이라도 날 것이라고 했으나 일부 말이 나오긴 했었으나, 결국 그대로 지나갔으며, 오히려 일각에서는 잘 지적하였다는 말로 격려를 보내준 낙농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글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보자.

『반성, 낙농인들의 오늘의 모습. 대다수의 낙농가들은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선량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빨리 도태되어야 할 낙농가들도 상당히 많다.

밤낮 고스톱장으로 변해버린 낙우회 사무실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낙농가인지 노름꾼인지 알 수 없고, 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마시는 우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란 걸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하다. 사료업자나 낙농기자재 업자들로부터 ‘사장님’ 소릴 들어가면서 노상 다방으로 술집으로 전전하며 소일하는 낙농가들은 처량하기만 하다.

젖소 1마리 키우든 100마리 키우든 낙농가는 어디까지나 낙농가일 뿐이지 무슨 사장님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스스로 농민이길 포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낙농가를 도와달라고 정부에 소리지르는 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 것이다.

사장이란 회사의 우두머리를 이르는 것이고, 회사란 상행위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므로 낙농가를 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장사꾼들이 선량한 농민을 우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낙우회나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이된 낙농가들은 지역 낙농가들의 건전한 이익을 위해서 자기희생을 각오하고 일해야 한다.

왜곡된 지도자들 때문에 지역 낙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들면, 낙우회 운영위원들이 특정 사료회사로부터 각종 음성적인 뒷거래나, 낙우회 운영비 명목으로 흥정하고 자기 낙우회

원 농가들에게 강제로 그 사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사료는 가격과 품질 어느 한쪽이 분명히 낙농가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걸 한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물론 이러한 낙농가들은 실로 1~2%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이 잘난체 떠돌고 다니고 큰소리 치고 하니 까 시끄러워 보일 뿐이다. 대부분 낙농가들은 참으로 땀흘리고 일하고 있다. 고스톱낙농가, 부동산투기 낙농가, 사장낙농가, 위선으로 포장된 지역 지도자... 이들은 낙농가가 아니므로 하루 속히 도태되거나 목장을 포기하여 진정한 낙농가들이 제몫을 참되게 얻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자신은 화투장으로 다방으로 노상 돌아다니며 젖소를 돌보지 않고서 목부 월급이 올랐다고 유대를 올려야 된다는 식의 낙농가는 이제 스스로 부끄러워 할 줄을 알아야 한다.』

오늘의 자화상이 모두 그럴수는 없다는 점을 필자도 서두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자!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다. 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그런 제도하에서 정책이 운영되고 하는 일은 정부의 일로 맡기기로 하자. 낙농가의 원유를 수매하여 정당한 값을 치르고 조합을 잘 운용하는 문제는 조합에 맡기기로 하자. 당장할 일은 무엇인가? 권리란 것은 바로 의무의 반면이라고 한다면 낙농가에 있어 그 반면이 되는 의무는 무엇일까? 답부터 말하면 1차적으로 자신감 충분한 좋은 품질의 원유를 생산하고, 2차적으로 그 원유가 잘 팔릴 수 있는 방법을 낙농가 스스로가 강구하는 일이다. 낙농가가 생산만 하고 소득만 올리면 내할 일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왜 그런가. 일례를 들어 본다. 먼저 지난해에는 양파파동이 일어 그 전년에 비하여 생산이 불과 11%정도가 늘어났는데 값은 무려 90%가 폭락하는 사태를 빚어 모든 양파농가가 피해를 입더니 금년들어서는 감자와 사과가 남아돈다고 난리가 났다. 생산이 부족하면 뚝딱 수입해다가 국민생활을 안정시킨다고 하지만 남는다고 할 때에는 신속히 해결되는 꼴을 못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안되는 줄 알면서도 정부에 기

대어 풀어보려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일런지도 모른다. 또 사실 인력, 재정, 제도가 얽히고 설킨 문제이므로 정부가 그런 일을 다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다 현명한 일은 생산자의 문제를 남에게 넘기지 않고 스스로 떠맡을 수밖에 없다.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관한 최상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 한 사람도 예외없이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마느냐 아니면 약간의 희생으로 손해를 막고 더 나아가 더욱 큰 이익의 기틀을 마련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조건 없이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그 농가가 바로 전기한 낙농가 부류에 속하는 낙농가이다. 남의 불에 게잡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낙농가가 앞장서서 원유 1kg당 1원씩을 무임승차자 없이 각출하면 연간 20억원 수준의 일반 수요창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먼저 낙농가가 그렇게 하여 기금을 내놓고 다음에 유업체에게 동일한 금액을 내놓도록 협상하자. 유업체로서는 매출액의 0.1%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다. 그들이 남의 회사 우유보다 우리회사 우유가 더 좋다고 하는 시장빼앗기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판촉비로 지출되는 비용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3%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0.1%가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덧붙여 농가와 유업체가 낙농산업을 위하여 이만큼을 조성하였으니 정부에도 같은 금액을 내놓게 하자. 무조건 얼마를 정부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명분도 실리도 있는 일이므로 정부가 거절하지 않을 것이며, 또 농발법으로도 정부가 그런 돈을 내놓는 제도가 있으므로 마음의 부담이 없을 것이 아닌가.

이런 방식으로 하여 조성한 수요창출 기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오해없도록 하기 위해 밝힐 것은 이 자금은 절대 생산자단체의 운영비나 대외 활동비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금운용의 기본은 우유라는 생산품이며 제품이 지니는 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으며, 따라서 이에 관련된 홍보비, 연구개발비, 교육비, 소비촉진 행사비 등에 순수한 내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다. 만약 이러한 측면을 벗어나 운영되려 한다면 (현행 농발법에 의한 제도는 수매비축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아예 시작해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점을 극복하는 것도 낙농가의 임무이다. (다음호에 계속)

5월호

1. 낙농산업 - 풀어야 할 과제
2. 시장개방 - 막다른 골목
3. 불안한 수급사정 - 자금운의 국가적 목표는 있는가?
4. 납득할 수 없는 일 - 생산비 보상
5. 농가수취가격과 유통 - 산업발전의 역류

6월호

6. 생산기반 - 3D시대와 경영환경
7. 그림의 떡 - 제도자금과 보조사업
8. 낙농가의 자화상 - 일반 수요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7월호

9. 수급관리제도와 정책 - 그나마 판도라 상자에 남은 것은
10. 낙농산업 - 시장방어 3단계 전략방안
11. 요약과 결론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